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

의안 번호	제196호
의결 년월일	2003. 10. 30 (제108회)

제안년월일 : 2003년 10월 30일

제안자 조례제정및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I. 제안이유

2002. 9월 제99회 임시회에서 특위구성을 의결 받아 2002. 11. 1부터 1년간 활동을 펼쳐온바 있음. 그동안 특위활동에서 계획하고 진행해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2004. 6. 30까지 특위 활동을 연장하고자 함.

II. 그 동안의 추진결과

1.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가. 특위구성 의결 : 제9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2002. 9. 10)

(※활동계획안 의결 : 제10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2002.10.10)

나. 활동기간 : 2002. 11. 1 ~ 2003. 10. 31

다. 특위구성 : 9명

○ 위원장 : 정 윤 종의원, 간 사 : 김 제 광의원

○ 분과위원회 : 3개 분과, 9명

- 기획재정분과(분과장 정영태의원) : 김제광, 이영우, 정영태의원

- 행정복지분과(분과장 이재진의원) : 이재진, 정운종, 한선재의원

- 건설교통분과(분과장 조규양의원) : 김혜성, 박병화, 조규양의원

라. 주요내용

○ 불합리한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조례 개정

○ 시대성과 행정상황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 폐지

○ 상위 법령의 사문화로 인한 조례 폐지

○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한 조례의 적극 제정

2. 회의개최 현황 및 주요내용

가. 제1차 회의

- 일 시 : 2002. 9. 17(화) 11:00
- 주요내용 : 위원장 및 간사 선임(위원장 정운중의원, 간사 김제광의원)

나. 제2차 회의

- 일 시 : 2002. 10. 4(금) 11:00
- 주요내용
 - 특위 활동계획서 자체심사 및 의견개진

다. 제3차 회의

- 일 시 : 2003. 1. 27(월) 11:00
- 주요내용
 - 분과 위원별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 확인
 - 향후 추진계획 토론 및 협의

라. 제4차 회의

- 일 시 : 2003. 4. 28(월) 14:00
- 주요내용
 - 의원별 담당조례 검토에 따른 제안설명 및 토론
 - ▶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검토
 - 조례전문가 초청 특별강연회 실시건 협의
 - ▶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 의정자문과제 부여

마. 제5차 회의

- 일 시 : 2003. 6. 13(금) 10:00
- 주요내용
 -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 올바른 조례제정 및 정비에 따른 연구방안 특강실시

▶ 강 사 :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

(의정자문 연구과제 유인 배부 : 70부)

※제105회 정례회 :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 의결

바. 제6차 회의

○ 일 시 : 2003. 9. 29(금) 11:00

○ 주요내용

-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심사 및 의견청취
- 관련 유관기관 의견서 제출 협조

사. 제7차 회의

○ 일 시 : 2003. 8. 22(금) 11:00

○ 주요내용

-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심사
-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 제107회 임시회 :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및 부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 의결

아. 제8차 회의

○ 일 시 : 2003. 10. 24(금) 11:00

○ 주요내용

-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 검토
-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의결

Ⅲ. 활동기간 연장

1. 연장기간

-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02. 11. 1 ~ 2003. 10. 31일에서 2002. 11. 1 ~ 2004. 6. 30일까지로 8개월간 연장한다.

2. 연장사유

-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 전반에 편의를 드리며,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함이 행정추진 제일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 우리시의 경우 아직은 시민생활에 불편함과 부당함을 초래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해야할 조례가 있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을 그동안 특위 활동과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음.
- 이에,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4. 6. 30까지 연장하여 기 검토된 조례의 제,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전국 타 시·군 특색 조례제정 및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과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